

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고시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』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61호, 2015.4.15.공포, 2015.7.1.시행) 제5조 제1항에 따라 「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0일

서대문구청장

1. 명 칭 : 2016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고시
2. 수립 배경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』에 의한 2016년 생활임금 시행
3. 수립 목적
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생활 수준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4. 적용기간 : 2016.1.1. ~ 2016.12.31.
5. 주요 내용
 - 생활임금 수준 : 7,200원[6,030원(최저임금) × 119%] / 월 1,504,800원
 - ※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: 기본급+교통비+식대
 -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 :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
 - ※ 단,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